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21
----------	-------

발의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송재봉 · 최혁진 · 민병덕
김우영 · 이수진 · 강준현
이광희 · 김남근 · 박정현
이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단체가 새로운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려면 해당 업종·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어 그 합의 기간 만료가 도래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으로서 시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신규 업종·품목의 지정이 어렵고 기민한 대응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되거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이 아니더라도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

항 제1호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3. 해당 업종·품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신청되었거나 합의가 도출된 업종·품목인 경우 그 경과

제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으로, “같은 항 제3호에”를 “제7조제1항제3호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 ----- ----- ----- -----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6개월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1.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보호·육성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	<삭 제>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
품목

3.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

③ ~ ⑦ (생략)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

3.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해당 업종·품목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신청되었거나 합의가 도출된 업종·품목인 경우 그 경과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

